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18
----------	------

제출연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청렴식권제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안 제6조)
-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
- 라. 청렴식권제도 운영(안 제8조)
- 마.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안 제9조)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검토의견 미반영(별첨 참조)
- 라. 입법예고 : 2013. 7. 8. ~ 2013. 7. 31.(의견 없었음)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중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청렴식권제도"란 공무원이 민원인 등과 함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식사를 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민원인 등을 포함하여 구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육아휴직·질병휴직·노동조합 전임휴직·가사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정직 중인 공무원
5. 구청장이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자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원과 울산광역시중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자동판매기
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장기근속·모범·친절·근무실적 우수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5. 해외 현장체험(배낭연수)
6. 소속 공무원의 생일·결혼·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7. 소속 공무원에게 청렴식권 지급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식권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과 식사하는 경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 청렴식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 주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담당 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붙임>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0월 7일 중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1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의안번호 제1018호)
(2013년 10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건·휴양·안전·후생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1)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청렴식권제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안 제6조)
-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
- 4) 청렴식권제도 운영(안 제8조)
- 5)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검토보고자 : 김규협 전문위원)

-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공무원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 시설 설치, 운영,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등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